

한편 지방세정의 전산화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정보화 관련 인프라구축 뿐만 아니라 보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세와 관련된 내부담당조직 및 담당자의 전문성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.

그동안 지방세분야의 전문성은 국제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온 것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. 세정의 전산화는 그것이 지향하는 효율성 못지 않게 그것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조직 및 인력의 질적 수준(Quality)제고가 전제되지 않

으면 안되는 것이다.

그리고 지방세정의 전산화는 그 목적이 세무행정의 효율화, 적절적으로는 징수비용의 절감등을 의도하는 것이라 해도 우리나라 지방세구조의 취약성(부동산경기에 민감한 세입구조와 재산세의 주의 세입구조, 서울시와 광역시에 편중된 세입구조, 국세에 비해 취약한 세입 규모등)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. ☺

지방세 관련용어 해설

• 法定相續主義(법정상속주의)

自由相續主義에 대한 말로서 相續人이 되는 者를 法律에서 정하고 그 자유로운 變更을 인정하지 않는 立法主義를 말한다. 우리나라의 民法에서는 身分相續으로서의 戶主相續은 徹底한 法定相續主義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財產相續에 관하여는 遺留分制度의 제한을 받는 自由相續主義를 先行시켰으므로 법정상속주의는 보충적인 地位에 놓이고 있다.

- 편집실 -